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	46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5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 이유

- 제천소방서 매포파출소와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의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
- 제천소방서 매포파출소와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의 운영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골자

- 직속기관 정원 11명 증원 (제천소방서 매포파출소 인력)
 - 지방소방위 1명, 지방소방장 2명, 지방소방교 4명
 - 지방소방사 4명
- 사업소 정원 4명 증원 (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인력)
 - 지방가축위생연구사 2명, 지방수의주사보 2명
- 이미 운영중인 정책보좌관 정원 중 기존의 6급이하 정원을 감축하여 한시정원으로 조정한 정원을, 지침 변경에 따라 감축된 당초정원으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해당 조례의 부칙 일부 수정
 - 조례 2180호('95. 2. 17)의 부칙 제3항의 한시정원 내역 중 본청 정책보좌관 3명을 삭제

□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제103조제1항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 제21조제1항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직속기관 “949” 을 “960” 으로, 사업소 “376” 을 “380” 으로 한다.

부칙(조례 제2180호 1995년 2월 17일) 제3항 중 “본청 정책보좌관 3명과” 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직속기관 정원은 1995년 10월 30일부터, 사업소 정원은 1995년 10월 25일부터 각각 적용한다.